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르20142 이혼
원고, 피항소인	안AA (*****-1*****)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최BB (주민등록상: 최CC)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 1 심 판 결	부산가정법원 2015. 8. 11. 선고 2014드단20324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12.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안 DD(19**. *. **.생, 이하 '딸'이라고만 한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2. 21.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6. 2. 2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피고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였고, 그 이후로는 같은 해 6. 2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2009. 11. 27.부터 같은 해 12. 5.까지 미국에 갔을 뿐이며, 그 외의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2006. 2. 21.부터 2014. 6. 19.까지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2012. 3. 20.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원

고의 이혼 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1, 12, 15, 17 내지 20, 22, 28 내지 31호증, 을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한편 피고 자신과 딸이 처한 상황에만 몰입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원고를 배려치 아니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모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등한 정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행동은 각각 민법 제841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EE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이EE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부정행위가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박숙희

판사 지현경